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72호)

2024년 3월 8일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2. 16.
나. 발의자 : 노미경 의원
다. 찬성자 : 박기홍 의원, 한성환 의원, 김상용 의원, 최길영 의원,
김시욱 의원, 이상걸 의원, 이상우 의원
라. 위원회 회부 : 2024. 2. 26.
마. 위원회 심사 : 2024. 3. 7.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노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 모두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업무위탁 범위 및 대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희숙)

- 본 개정 조례안은 울주군민이 건강하고 질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 및 문화를 형성하고 존엄성을 지키면서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웰다잉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5. 소수의견 : 없음